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- 나. 제출일자: 2021년 4월 13일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6일
- 라. 상정일자: 2021년 4월 23일

(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감사관 유수남)

가. 제안이유

- 2020. 12. 20.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시행 2021. 6. 23.)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
 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
- 일부 미비사항(띄어쓰기, 법률표기)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2020.12.22.개정, 2021.6.23.시행 예정)에 따라 ‘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’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, 민간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면서,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1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7명”을 “9명”으로,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7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제18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8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 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1명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7명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 는 시민단체(「<u>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</u>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한 사람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7명</u> 중에서 선임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13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9명</u>----- ----- ----- 「<u>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</u>」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9명</u> 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

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
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
취급의 승인

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법 제1
8조의2제3항-----

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「공직자윤리법」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689호, 2020. 12. 22., 타법개정]

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**11명**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**7명**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7689호, 2020. 12. 22.> (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「공직자윤리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75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**13명**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**9명**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7754호, 2020. 12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